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668

발의연월일: 2023. 3. 15.

발 의 자:홍영표·장철민·정춘숙

이원욱 • 김종민 • 김영진

박광온 • 유영찬 • 강병원

김교흥 · 송기헌 · 양정숙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등 현행 법령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을 국가 전략기술로 규정하고,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더해 최근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디스플레이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할 계획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 고용 창출과 수출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왔던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전기차,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등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 등 선진국의 적극적인 자국 산업 보호정책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고려할 때 전기차 등 환경친 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은 절실한 상황임. 한편,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여도 현행법 제13 0조에 의해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사업장이나 공장이 소재한 자동차 회사의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일괄 상향하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제작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 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해당 시설투자금액의 20%에 상 당하는 금액을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서 공제함으로써 자동차 산업의 투자 및 전환을 촉진하고 국가전략기 술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의8 신설).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중 "100분의 8(중소기업은 100분의 16)"을 "1 00분의 10(중소기업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2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8(전기자동차 생산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환경친화적 자동 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 화적 자동차의 제작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투 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 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자동차 생산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제25조의8의 신설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시설투자금액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	
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	
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	
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	
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	
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제금액	2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	가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	
00분의 1(중견기업은 100	
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	
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	

다.

- 1) (생략)
-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

나. (생략)

② ~ ⑤ (생 략)

<신 설>

· 1) (현행과 같음)
2)
<u>100</u> 분의 <u>10</u>
<u>(중소기업은 100분의 20)</u> -

나.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의8(전기자동차 생산시설 에 대한 세액공제) 「환경친화 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제작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시설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